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26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0.

발 의 자 : 박정현 · 진선미 · 위성곤
양부남 · 허 영 · 민형배
서영교 · 임미애 · 김현정
이재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‘스몸비’(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)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이 만연하고 이로 인한 사고 역시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
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보급률이 72%에 달하며, 10명 중 4명이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, 더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예방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.

이에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

설 또는 장비에 보행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12조제5항제3호의3 신설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3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의 이동전화 등 모바일·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(모바일·스마트기기에 설치된 모바일 앱 등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터넷 검색 등 스마트기기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· 해제 및 관리) ① ~ ④ (생 략)	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· 해제 및 관리) ① ~ ④ (현 행과 같음)
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 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 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3의2. (생 략)	-.
<u><신 설></u>	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	<u>3의3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 행 중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 린이의 이동전화 등 모바일 ·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(모바일 · 스마트기기 에 설치된 모바일 앱 등 소프 트웨어와 연동하여 어린이 보 호구역에서 인터넷 검색 등 스마트기기 일부 기능을 일시 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</u>

4. (생략)	<u>다</u>) 4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